

# 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년 6월 24일 김문호 의원 등 8인

나. 회부일자 : 2011년 6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72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1년 7월 12일) 상정 수정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김문호 의원)

### □ 제안이유

- 70%가 넘는 높은 화장률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 원정 장례, 후 순위 예약, 이용료 차등 등 장례문제로 인한 시민들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장장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의 경제적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화장문화 정착에도 기여하기 위함.

###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 및 제2)
-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지급토록 지급대상을 정함.(안 제3조)

- 장려금을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70퍼센트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4조)
- 장려금 지급 신청은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신청 방법을 정함.(안 제5조)
- 장려금은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좌입금 하도록 함.(안 제6조)

###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집행부에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시민들이 화장료의 50% 지원을 선호하고 있는데 70%를 지원하고자 하는 이유는?	○ 부평화장장의 경우 50%를 지원하면 시민들이 50만원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시민들에게는 과중함. 70% 정도는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이상 김문호 의원)
○ 시장께서도 의회에서 70%로 통과 되면 수용하겠다 하였는데 과장 의견은?	○ 시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50% 지원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음.
○ 적은 비용으로 화장이 가능한 지역도 있듯이 각 지방마다 화장비용이 다름. 70%를 지원하여도 예산에 많은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 알겠음
○ 집행부안과 다른 1년으로 거주제한을 하였는데 집행부 입장은?	○ 인근 인천시 사례를 참고하여 집행부안은 6개월로 하였음. (이상 주민생활지원과장)

※ 기타 질의답변은 “회의록 참조”

#### 4. 토론요지

- 타 시·군의 화장장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부천시민 즉, 유족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거주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됨. 굳이 거주제한을 둔다면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는 것으로 수정이 요구됨.
- 부천시민으로서의 의무, 위장전입에 대한 우려 등을 감안할 때 거주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170
의결 연월일	2011. 7. 12

제안년월일 : 2011년 7월 12일

제안자 : 행정복지위원장

## 1. 수정이유

- 시·군의 화장장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부천시민 즉, 유족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거주기간에 대한 제한을 삭제함.

## 2. 수정 주요골자

-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사망일 현재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로 수정함(안 제3조제 1호)

# 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 수정안

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호 중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를 “사망일 현재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로 한다.

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조례안과 같음.』

## 신·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p>제3조(지급대상) (생략)</p> <p><u>1.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u></p>	<p>제3조(지급대상) (조례안과 같음)</p> <p><u>1. 사망일 현재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u></p>

## 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장”이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3. “화장장려금”(다음부터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사망일 현재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2. 부천시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제4조(지급기준) 장려금은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5조(신청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연고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려금 지급 신청은 화장일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대장 비치·관리)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